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년 9월 2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포상·징계에 대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위원회는 회원의 신상필벌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원을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협회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위원이 징계대상이 되었거나 징계대상이 된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협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심의한다.

1. 정관 제64조(포상) 및 제65조(회원의 징계),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택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관리사 내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한 경우

4. 주택관리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부정의 의혹이 있어 협회로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장 또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포 상】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인 및 각 시도회도 포함된다).

1.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에 공이 있을 때

2.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을 때

3. 기타 타의 모범이 될 공로가 있을 때

제6조 【징 계】 ①위원회는 정관 제67조(징계절차),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주택관리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자

2. 취업한 회원이 입주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이권 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협회에 반대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으로 회원 간의 단합을 저해하고 협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정관 등을 고의로 위반하여 본 협회의 발전을 저해한 자

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회원 또는 협회를 비난, 음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인신공격, 인격모독 등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자

6.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저해하고 다른 주택관리사 등을 음해, 비난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한 징계 및 직무정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권리정지(홈페이지 사용정지를 포함한다) 및 직무정지

3.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정지 및 직무정지

4.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정지 및 직무정지

5. 제명

제7조 【징계의 절차】 ①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

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와 제6조제2항의 징계를 의결로써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협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협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위원회의 보고가 있거나 이사회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징계의 내용, 징계 개시일 등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대상자가 징계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결정 후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

⑥회원 상호 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중재를 제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다만, 국가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2008. 9.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